

<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9 - 390호 >

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장기폐문, 이사불명,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
2. 공고기간 : 2019년 09월 16일 ~ 2019년 09월 30일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불임 참조
4. 공고내용

위 차량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및 매각조치되며, 동법시행령 제21조1항에 의하여 100~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,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.

2019년 09월 16일

천안시 동남구



☎ 문의처 : 천안시 동남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☎041-521-4422